

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4. 16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4. 16(의안 제 17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64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(2002.4.25)

2. 제안이유

2001. 7. 6일자로 고시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에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 반영 요청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요청내용

지구별	매립목적	당초(고시)	변경	증감	비고
신촌 I 지구	기타 시설용지 (해안도로)	0.025000km ²	0.010000km ²	(감)0.015000km ²	매립구간축소
주문지구	기타 시설용지 (도로침식방지)	0.020000km ²	0.065000km ²	(증)0.045000km ²	매립구간확대

4. 전문위원검토보고

- 본건은 제53회 사천시의회에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의회 의견 요청안에 의거 원안 가결되어 2001. 7. 6일자로 고시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
- 2002~2003년도 연안정비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것으로
- 용현면 신촌 I 지구의 축소코자하는 구간은 해안경관이 우수하고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해안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보이며

- 용현면 주문지구의 주문리구간 외에도 연계된 용현면 금문·송지리까지는 해안침식 및 연안 육지부 유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포락지 발생이 예견되며 이미 상당부분의 해안선이 훼손되어 보존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복구가 어려우므로 용현면 금문·송지리구간까지 연장 조정하여 매립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
- 공유수면을 다른 목적으로 매립코자 하는 것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, 재해 확대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존 등 연안 정비사업의 목적과 같이 연안보전을 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
- 2001년 계획 당시 좀 더 치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했던 아쉬움은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집행부의 안에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에 동의함(단, 도로는 최대한 직선화)